

## 2021년 6월 반부패·청렴 퀴즈 정답 및 해설

### Q 1 (○)

· 산하기관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면서 익일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.

**(해설)**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기간·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갑질(업무 불이익 유형)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.

### Q 2 (○)

· 공무원이 거래처에 전화하여 이웃돕기 행사에 기부할 50kg 쌀 등 기부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.

**(해설)** 공익목적과 무관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니 주의 바랍니다.

### Q 3 (○)

·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(해설)** 가상통화 관련 직무\*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(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6조의8 제3항)

- \* 1.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·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
- 2.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·조사·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
- 3.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·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
- 4.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

### Q 4 (×)

·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(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) 위반에 해당한다.

**(해설)** 공무원이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 행동강령(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)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### Q 5 (×)

· “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”, “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”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는 명확하지 않아 부정청탁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.

**(해설)** 공직자가 처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, “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”, “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”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도 거절의사로 봅니다. (청탁금지법 매뉴얼, 2019, 국민권익위원회)

### Q 6 (○)

· 공직자가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‘동일한 부정청탁’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, 이때 동일 내용의 부정청탁을 처음 한 사람(A)과 그 후에 한 사람(B)이 다르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.

**(해설)**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‘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’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므로, 동일한 내용의 부정청탁을 처음 한 사람(A)과 재차 한 사람(B)이 다르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.

### Q 7 (○)

· 발송인 정보 미기재 등의 사유로 선물 제공자를 몰라서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선물을 지체없이 신고하고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**(해설)** 발송인 정보 미기재 등의 사유로 선물 제공자를 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‘신고의무’가 있습니다.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언(택배기사, 경비원 등)을 확보하여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### Q 8 (×)

· 공직자가 수수 금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청탁방지담당관,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신고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**(해설)**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### Q 9 (×)

· 공직자가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.

**(해설)**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·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### Q 10 (×) (외부강의등 신고)

· 공직자가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「청탁금지법」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.

**(해설)**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검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「청탁금지법」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